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78
----------	------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2023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심사보류)
  -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 2023년 9월 11일
    - 상정,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다. 위탁기간 : 3년(2024. 3. 1. ~ 2027. 2. 28.)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민간위탁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마.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 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551.10m<sup>2</sup>, 건축면적 3,472m<sup>2</sup>  
(지상 3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조리, 제과·제빵, 피부, 헤어, 의상 등), 강당, 상담실, 수영장 등
- 인력현황 : 11명 (센터장, 교육팀, 취업팀)
- 위치도



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106백만원('23년 예산)

- 인건비 646백만원, 운영비 944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95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3. 7. 2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 제2항<sup>1)</sup>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 생활문화교육 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제2항<sup>2)</sup>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sup>3)</sup>, 「서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2)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sup>4)</sup> 등에 따라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현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붙임).

- 초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였으나 1999년 7월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2년 동부여성발전센터, 200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2004년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 순서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센터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소재지	면적(m <sup>2</sup> )	연간사업비 (천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3,472m <sup>2</sup> (지상3층~ 지하1층)	1,105,817천원 ('23년 기준)	'21.3.1~'23.2.29. (개소일: '99.7.15)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단위 : 명)

계	센터장	팀장	직원
8	1	2	5

교육운영						취·창업지원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구직자 (명)	취·창업 (명)	취업률 (%)
교육 인원 (명)	수료 인원 (명)	수료율 (%)	교육 인원 (명)	수료 인원 (명)	수료율 (%)			
2,795	2,048	73.3	1,013	916	90.4	2,407	1,196	49.7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5.14., 2020.7.16., 2021.5.20.>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 >

구분	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99.7.15.~'02.11.30.	(사)여성자원금고	공개모집
2차~6차	'02.12.1.~'17.11.30.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	공개모집
7차	'17.12.1.~'21.2.28.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	공개모집 (시의회 동의 '18.9.14.)
8차	'21.3.1.~'23.2.29.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공개모집

\* 「민간위탁조례」 2021.12.30. 개정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 재위탁과 재계약은 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음.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5)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6)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7)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

5)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sup>8)</sup>에서 시장의 사무인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1., 2020.7.16., 2021.5.20>

- 다만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제3항<sup>9)</sup> 및 제18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2021년 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 결과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5개 여성발전센터 중 최하위인 100점 만점 중 81.48점으로 C등급을 받았음.
- '22년도 센터 실적<sup>10)</sup>에 따르면 취업률이 49.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 등 센터의 고유사무인 여성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보이는 바,
- 사전에 위탁공모에 대한 홍보 등 해당 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탁체 참여의 독려가 필요해 보임.

---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10) 양성평등담당관-11609,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7.19.

<b>붙임</b>	<b>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현황</b>
-----------	------------------------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신월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규모	대지3,312㎡ 건물7,406㎡	대지1,551㎡ 건물3,472㎡	대지15,067㎡ 건물 5,786㎡	대지4,959㎡ 건물4,910㎡	대지2,010㎡ 건물3,871㎡	
추진경위	설립	'02. 5. 1.	'97.12.03.	'79.10.26.	'89. 9. 8.	'86.12.16.
	명칭	동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플라자('05.11)→여능원('7.07)→동부여성발전센터('14.10)	서부여성발전센터	구로부녀복지관 →남부여성발전센터('96.9)	노원부녀복지관 →북부여성발전센터('96.9)	마포복지관 →중부여성발전센터('96.9)
	운영방식	민간위탁	직영 ↓ 민간위탁('99.07)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3.10)
위탁법인(대표)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이인자)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장만희)	(사)서울여성노동자회(신상아)	(사)한국여학사협회(오민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안인숙)	
위탁기간	'20.10.01.~ '23.09.30.	'21.03.01.~ '24.02.29.	'22.05.01.~ '25.04.30.	'22.05.01.~ '25.04.30.	'21.10.15.~ '24.10.14.	
인력	14명 창플(2명)포함	11명	12명	12명	11명	
'23년 예산*	1,735백만원	1,105백만원	1,205백만원	1,225백만원	1,042백만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8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4. 3. 1. ~ 2027. 2. 28.)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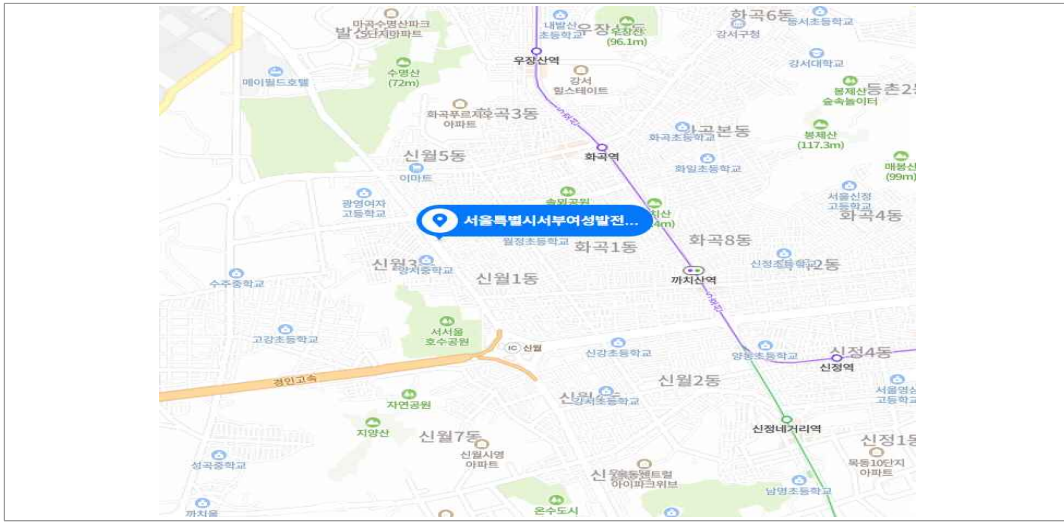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 규 모 : 대지면적 1,551.10m<sup>2</sup>, 건축면적 3,472m<sup>2</sup>(지상 3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조리, 제과·제빵, 피부, 헤어, 의상 등), 강당, 상담실, 수영장 등
- 인력현황 : 11명(센터장, 교육팀, 취업팀)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106백만원(2023년 예산)

- 인건비 646백만원, 운영비 944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95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3. 7. 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일자리팀 황병훈(☎ 2133-5019)